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0-961호

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81호(2009.5.7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10호(2013.4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87호(2016.9.8.), 은평구고시 제2016-94호(2016.11.3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7-82호(2017.8.3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20-7호(2020.1.16.)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, 은평구고시 제2017-11호(2017.1.26.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-114호(2019.10.10.), 서울특별시 은평구고시 제2019-133호(2019.12.5.)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된 은평구 대조동 88, 89번지 일대 대조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4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합니다.
2. 상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및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07월 02일

은 평 구 청 장

1. 공람기간: 2020. 7. 2. ~ 2020. 7. 16.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
 - 1)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(☎ 351-7364)
 - 2)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☎ 02-385-0050)
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4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 - 1)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 - 2)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
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88, 89번지 일대
 - 구역면적 : 111,665.3㎡
 - 3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
 -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
 - 4)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 : 2019. 12. 5. (최초:2017. 1. 26.)

5) 주요변경내용

구 분	사업시행인가(변경안)	비 고
시행기간	사업시행인가일(2017.1.26.)로부터 90개월	(증) 30개월
구역면적	111,665.30㎡	(감) 377.4㎡
규 모	지하4층/지상5~25층/28동	(증) 2동
건축면적	22,324.96㎡	(증) 3,134.10㎡
주택 건설비율	임대주택 368세대	(감) 50세대
	분양주택 2,083세대	(증) 112세대

5. 기타 관계서류(도면 등)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및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공람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람기간 내 은평구청 주거재생과 (☎ 351-7364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공람도서는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관계부서 협의결과 및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서, 관련 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공 란 의 견 서

사 업 명	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			
공람기간	2020년 7월 2일 ~ 2020년 7월 16일			
대 상 물 건 지	토지 :			
	건물 :			
의 견 제 출 인	성 명		생년월일	
	연락처			
	주 소			
내 용				